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 6.

자 본 시 장 국
기 업 회 계 팀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회계개혁 성과 및 평가	2
III. 회계제도 보완방안	5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6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8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10
4.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	12
V. 기대효과	15
VI. 향후 계획	16
[참고] 회계개혁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7

I. 추진배경

-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 신설('17.10월)
 - * ① 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②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③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④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⑤ 과징금 제도 신설 등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월)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이 5년 경과
 -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이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심화
- 다만, 감사보수 상승에 대한 기업의 불만만으로 회계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이 필요
 - ① 외부감사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만 투명한 회계는 투자자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② 회계개혁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정도의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회계투명성이 제고된 것은 분명
 - * '13년부터 7년간 하향 추세이던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상승 추세로 전환
 - ③ 감사보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감사보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
 - * 상장사 감사보수 상승률(%) : ('18년)14 ('19년)27 ('20년)29 ('21년)7 ('22년)14
 - ** 상장사 감사보수/매출액(% , '21년) : (한국)0.17 (미국)0.44 (캐나다)0.33 (유럽)0.15
-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보완 필요성을 검토

➔ 회계개혁 주요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도별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마련*

* 금융위(금감원),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구성운영('22.9~12월)

* 추진단과 별도로 회계학회 연구용역 진행('22.10월~'23.2월, 공청회: '23.2.10)

II. 회계개혁의 성과 및 평가

1. 총괄

□ (성과) 우리나라의 회계개혁은 대내외적으로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평가가 다수

○ 개혁 이후 상장회사의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IMD 회계투명성 평가 순위*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 시현

* IMD회계투명성평가(순위) : ('17) 63 ('18) 62 ('19) 61 ('20) 46 ('21) 37 ('22) 53

<회계개혁(17년)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상장회사 평균	1,700	1,875	2,192	2,366	2,410	2,669	57.0%	9.4%
2조이상	7,531	8,303	11,463	11,309	10,880	11,062	46.9%	8.0%
5천억~2조	2,479	2,687	2,901	3,852	3,808	3,880	56.5%	9.4%
1천억~5천억	1,190	1,309	1,401	1,494	1,554	1,964	65.0%	10.5%
1천억미만	837	925	953	1,055	1,120	1,069	27.7%	5.0%

○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기업관계자·공인회계사 대상, 금감원)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4년 연속 상승*

* 연도별 점수: ('18년) 3.66 → ('19년) 3.95 → ('20년) 4.42 → ('21년) 4.77

□ (한계) 최근 경기상황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와 맞물려 기업들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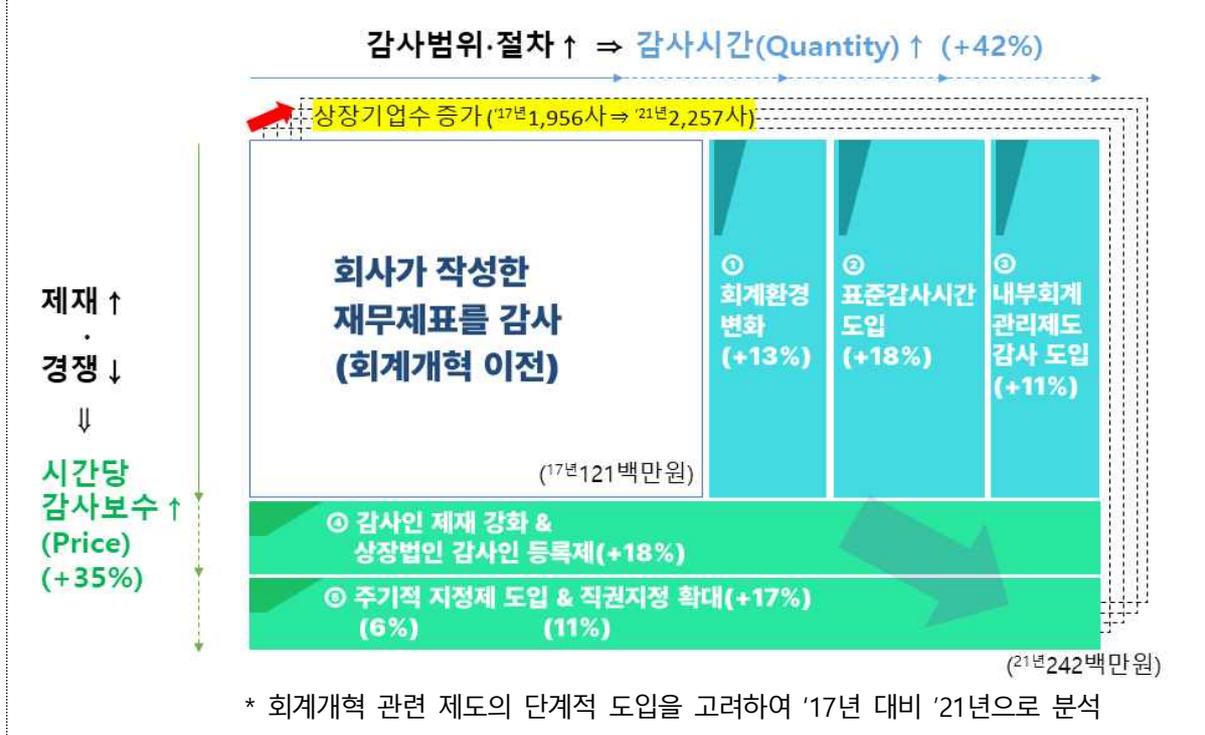
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시행 ➡ 총 감사보수(P×Q) 증가

* 총감사보수 상승(100%)에는 감사시간과 시간당 단가가 각각 60% : 40% 정도 기여

<회계개혁(17년)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

감사보수(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상승률	연평균 상승률
상장회사 평균	121,320	138,320	175,616	225,919	241,925	275,615	127.2%	17.8%
2조이상	553,687	625,699	923,077	1,078,019	1,121,709	1,156,386	108.9%	15.9%
5천억~2조	168,893	187,977	227,455	351,871	367,015	394,691	133.7%	18.5%
1천억~5천억	84,147	95,725	112,427	144,727	156,020	201,055	138.9%	19.0%
1천억미만	60,914	70,226	77,481	105,387	115,793	116,894	91.9%	13.9%

< 감사보수 상승 요인 분석 개요* >



➔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은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②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중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20년) 이후 큰 폭 상승하여 '22년에는 절반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음

<회계개혁(17년) 이후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현황>

지정감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장회사수 (코넥스제외)	2,013	2,079	2,175	2,239	2,326	2,410
지정대상수	128	217	698	1,018	1,224	1,090
주기적지정	-	-	219	434	593	531
직권지정	128	217	479	584	631	559
지정 비중(%)	6.4	10.4	32.1	45.5	52.6	45.2

○ 아직 외부감사시장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제고 여지가 있는 만큼 지정제가 필요하지만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문제

○ 자유선임은 감사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지정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유인 저하

➔ 지정감사 비중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회계개혁 주요제도별 평가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등 감사인 지정제 확대

- (내용) 상장회사(일부 비상장포함)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직권지정사유 확대**

*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 ①3년연속 영업손실 ②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

- (현황) 상장회사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수감
- (평가) 외부감사인 독립성 개선 vs 시장 경쟁원리 훼손

2]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 (내용)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 (현황)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 시행

* (별도) 자산 2조원('19년) → 5천억원('20년) → 1천억원('22년)

(연결) 자산 2조원('23년) → 5천억원('24년) → 1천억원('25년)

- (평가)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 vs 비용 대비 효익 낮음*

* 예) 거래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의 결과'인 증빙을 충실히 검증할 경우 거래의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도 회계오류 방지 가능

3] 표준감사시간제

- (내용) 공인회계사회가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고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을 재조정('19.2월~, '22.1월 한 차례 개정)

- (현황) 표준감사시간, 지정제 확대 등으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이 상당 증가

* 상장사 평균 감사시간(시간) : ('17) 1,700 → ('22) 2,669 (+57%)

- (평가) 감사품질 개선(감사시간↑) vs 감사보수 부담 증가*

* 개별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감사시간 증가만 야기

Ⅲ. 회계제도 보완방안

기본 방향

- ◇ 現 회계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비용 대비 투자자 편익이 크지 않은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
- ◇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5년 전 도입한 제도들의 시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마련

분야	추진과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②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③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권지정사유 축소 ② 주기적 지정제 보완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제고 ③ 기업·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②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③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④ 재무기준 지정사유 연속발생에 따른 부담 완화 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⑥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1.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시기 조정

- **[현행]** '23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 제도(이하 '연결 내부회계')가 도입*되어 외부감사 실시 예정

* ('23) 자산 2조 이상 → ('24) 자산 5천억 이상 → ('25) 자산 1천억원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중소형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 (비용 예시) 지배·종속회사 연결 내부회계 구축·유지비용, 지배·종속회사 감사인의 추가 감사시간 투입비용, 지배·종속회사 간 회계, 자금, IT시스템 통합비용 등

※ 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23년) 수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약 1,100억원 수준(회사당 6.2억원)

- 또한, 연결 내부회계의 구축·평가 대상이 되는 종속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무 혼선 발생 우려*

* 現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 구축·운영·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의적 부문'에 대해 감사인별로 다양한 관점 존재 → 일관된 기준 제시 필요

- **[개선]** 기업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를 감안해 중견·중소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연결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기업부담을 감안하면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도입 시기를 5년간* 유예('24년→'29년)

*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시 제도 도입 여부를 함께 검토

- ②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23년)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

- 대형 상장사(2조원 이상)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결 감사준비도 일정 부분 마친 점 등을 감안*

* '21.12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1년 유예('22년→'23년)

- 다만, 내부 상황에 따라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요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 허용

* (절차) 유예 요청(기업→금융위) → 연결 내부회계 유예사유 및 도입시기 공시(기업)

<자산규모별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조정>

연도	2023	2024	2025	~	2029	2030	2031~
(현행)	2조 ↑	5천억 ↑	5천억 ↓	전체 도입('25년~)			
(개선)	2조 ↑	5년 유예		5천억 ↑	5천억 ↓	전체 도입('30년~)	

③ 연결 내부회계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도 위주*'로 감리

*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아닌 이상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감독지침 마련 등

2.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 **[현행]** '23사업연도부터 종속기업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별도' 및 '연결' 기준으로도 보고받아야 함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시기**

[별도] ('19) 자산 2조 이상 → ('20) 5천억 이상 → ('22) 1천억 이상

[연결] ('23) 자산 2조 이상 → ('29) 5천억 이상 → ('30) 1천억 이상

- 지배회사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에는 종속기업 내부회계 효과성에 대한 의견도 포함 → 중복 보고 필요성 낮음

- **[개선]**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연결 감사의견으로 일원화)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美·日)도 연결 감사의견만 보고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 **[현행]**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5천억원)는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과 감사비용이 동시 발생*하여 부담 가중

*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5천억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비용('23.1월 기준)
- 구축비용(1회성) : 약 0.71억(평균 감사보수의 50% 수준)
- 감사비용(매년) : 약 0.58억(평균 감사보수의 40% 수준)

-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사의 상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개선]**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

*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함
※ 주요 선진국들도 중소 신규 상장사에게는 일정기간(美5년, 日3년) 내부회계 외부감사 유예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개정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1. 직권지정사유 축소

- **[현행]** 회계개혁('17년)으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지정사유가 큰 폭 확대*(11→27개)

* 3년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

- 다만,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함에 따라 상장회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과도하게 증가(50% 이상 수준) ➔ 감사인간 품질경쟁 저해 우려

* 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사실상 관리종목 지정 사유와 중복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부정행위 등 보고의무 위반, 지정기초자료 미제출 등

- **[개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관련 사유는 폐지·완화 (現 27개 中 16개 사유 폐지·완화)
 - '재무기준 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2개) 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14개)
 - *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2차 위반시) 직권 지정
 - 자발적 지정사유*(4개)와 회계부정 연관성이 높은 사유**(7개)는 유지
 - * 회사요청, 주주·채권자 요청, 상장예정법인, 타 법령 요청
 - ** 감리조치, 관리종목 지정, 횡령 등 공소제기 등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 주기적 지정제 보완

- **[현행]**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그 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6+3)
 -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과 지정대상 회사를 각각 감사인 지정점수(소속 회계사수 등을 기반으로 산정)와 자산총액 순서로 배열하여 순차적으로 매칭하는 방식
- '19.11월, 220개사의 '20년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시작으로 매년 약 220개사씩 지정 중*(23.2월 기준 전체 지정대상의 약 60% 지정)
 - * 전체 상장사 등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1회 적용하는데 약 8년 소요 예상
-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되어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회계법인)과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기업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기업)이 대립

※ (참고)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22.11월~'23.2월) 中 "주기적 지정제" 관련 내용

- (실증분석)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지정기업에게 감사보수 상승과 감사품질 제고 동시 시현 추정
 - 다만, 분석범위의 한계(지정 3년차('22년) 효과 미반영) 등으로 인해 대안 도출을 위한 실증근거가 부족
- (제언) 현 제도(6+3)가 충분히 시행된 이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대안 도출 필요

□ **[대응]** 당분간은 現 주기적 지정제(6+3)를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검토*

*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회계학회)

* 보완방안(예시) : 자유vs지정 비율을 2:1에서 3:1 수준으로 완화(9+3, 6+2 등)

○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방지

* 현 제도도입 이후 전체 지정대상 기업 중 1회 이상 지정(주기적+직권)된 기업은 약 60% 수준(약 40%는 지정감사 수감 전)

○ 지정 종료 後 자유선임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 확보 필요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1.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 적정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지표(guide)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

○ 그러나, 법령*과 한공회 내규**에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입취지와 달리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은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외부감사법§11⑩10.)

** ①한공회 회칙 §16(회원의 의무) :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회원의 준수 의무 규정

②한공회 행동강령 §25 : (표준감사시간 미달시) 품질관리실 검토 요구, 행동강령 신고센터 신고의무 규정 등

□ **[개선]**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 상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여 업무관행 개선

* 예) ①한공회 회칙에서 '회원의 의무' 중 '표준감사시간 준수' 삭제, ②한공회 행동강령에서 표준감사시간 미달시 행동강령 신고센터 의무규정 폐지 등

☞ (조치 필요사항) 한공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제고

- **[현행]**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인, 회계법인 5인, 회계정보이용자 4인*, 금감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
 - * 한공회장이 위촉(교수, 신용평가회사 임원, 기업체 사외이사 등)
 - 한공회장이 위촉한 위원 9명과 금감원이 추천한 위원 1명이 출석하면 기업계 위원(5명) 없이도 개의 및 결의 가능*
 - * 심의위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개선]**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4명→2명)하고, 추천 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
 - 표준감사시간 공신력 확보를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2명) 중 1명은 학계 인사로 위촉

☞ (조치 필요사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3. 기업과 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 **[현행]** 감사인은 감사계약시 기업에 감사투입예정시간과 그에 근거한 감사보수를 제시
 -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회계법인은 기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감사시간과 일치하는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감사시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
 - 기업은 감사시간 산출내역과 감사내용 등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워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적정성 파악 곤란
- **[개선]**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 감사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투입인력 현황, 피감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전기 감사시간과의 차이 발생 이유 등

☞ (조치 필요사항)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1. 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 **[현행]**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와 상담센터(상장협·코스닥협)를 운영 중('19.10월~)이지만 활용도가 저조
 - * 대부분 유선을 통한 단순 문의(감사보수 적정성, 제도 관련 질의) 위주
 - 이는 동 센터(신고/상담)의 조정 기능과 독립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과 감사 수감과정에서의 불이익 우려 등에 기인
 - * 예) ①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 ②신고처리 과정에서 감리권한을 보유한 감독기관(한공회/금감원)에 의한 감리조치 우려 등
- **[개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거래소, '22.9월 설치)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 적발시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자 징계(증선위에 건의)

2.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외감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 **[현행]** 자유 선임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감사팀이 회계법인 편의대로 구성되는 경향
 -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 초래
- **[개선]**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과
 -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전무할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 차감(최소 1명 이상 확보)
 -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대분류(6개)로 구분하되, 제조업서비스업은 세분화 → 총 15~20개
 - 감사팀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외감규정 §8① 별표1)에 따라 감사인(회계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담당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 '감사팀 산업전문성 수준' 추가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사항

- **[현행]**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

* 기본점수 = 등록회계사수(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 0.5 x 수습회계사수

- 고년차 회계사가 많을수록 지정기업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력 대비 많은 기업이 배정 ➔ 감사품질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선]** 인력 대비 적정한 기업이 배정되도록 고년차 회계사 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감안)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

구분	2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산실)
현행	100	110	115	120	120	120	120
개선(예)	100	105	110	115	120	110	100

4.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 발생 부담 완화

※외감규정 개정사항

- **[현행]**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中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

-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사보상배율 1미만

- **[개선]**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中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 보장** (1~3년)

* 외감법(§10)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3년), 그 외 회사(1년)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비교(현행/개선안)



5.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외감규정 개정사항

- **[현행]**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②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③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 現 외감법령 상 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예)외감대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자산기준 등)

-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존재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 **[개선]**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4,5번 과제 관련)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계획(9쪽 참고)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先 조치

6.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사항

- **[현행]**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 지배·종속기업에 각각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빈번

- 이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 요청시(법 §11①1호)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사전통지하고 회사가 재지정 요청시* 지정 감사인을 변경하는 감사인 지정 업무 프로세스에 기인

* ①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일치, ②외국투자자 출자조건 제한 등은 재지정 사유에 해당

- **[개선]** 회사가 지배·종속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감사인을 동일하게 지정

IV. 기대효과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예상 효과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 별도 감사의견 공시의무 면제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약 1,5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내부회계 공비용 감소 (회사당 약 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한시 유예(5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약 2,3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내부회계 도입 비용* 감소 *연결 내부회계 구축 및 추가 감사비용, 지배종속회사 회계 시스템 통합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 범위 단계적 확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약 1,5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자산 5천억 미만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자산 1~5천억원 신규 상장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감소(3년간) (회사당 약 186백만원)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지정제 보완 	현 제도(6+3)를 한 주기 시행 후 보완 여부 검토	주기적 지정 대상 기업* *상장회사, 대형비영장회사 (자산 5천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간 형평성 및 제도 보완을 위한 데이터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직권지정 사유 정비 (총 27개→11개)	직권지정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회사 지정비율 완화를 통한 감사 품질경쟁 유도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 성격임을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강행규범성 우려 해소	외감 기업*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약 20,5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감사인 간 외부 감사계약 관련 분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족 구성을 편향되지 않게 개선 	'정보이용자' 대표 위원 추천기관 변경(한공회→금융위(금감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 수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감사계약 체결보고(기업→금감원) 양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감사인 간 외부 감사계약 관련 분쟁 감소

IV. 향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입법필요 사항(법률, 시행령 등)은 '23.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추진과제	조치사항	담당	일정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감독지침 등 마련	금융위· 금감원	'23.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부담 경감 	법 개정	금융위	'23.4분기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법시행령 개정	금융위	'2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지정제 보완 	추후 검토	금융위	-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한공회 회칙· 행동강령 개정	금융위· 한공회	'23.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중립성 강화 	시행령 개정	금융위	'2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23.3분기
4. 지정감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중기 회계지원센터 내 운영	금융위· 거래소 등	'23.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23.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	금융위	'23.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외감규정 개정	금융위	'23.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외감규정 개정	금융위	'23.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외감규정 개정	금융위	'23.3분기

1. 추진배경

- 1981년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수 차례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국내 기업회계 전반의 대대적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
- '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계개혁」을 추진
 - 과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 회사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 ①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글, 샤넬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과세투명성 확보 및 국내 기업과의 경쟁환경 형평성 제고
- ②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 (기존)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책임 강화
 -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 ③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 * 기업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감사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품질 제고 >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非상장사*에 대해 9년 주기로 6년 자유선임 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자산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 대표이사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기업과의 유착 방지 가능

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 유도

< 정부 : 회계부정·감사부실에 대한 감독 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

⑥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종전에는 자본시장법상 재무정보 공시 위반으로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과징금 부과대상이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한정됨)

회 사	회 사 관 계 자	감 사 인
분식액 20% 이내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보수 5배 이내

⑦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⑧ 회계부정·감사부실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징역 (5~7년 → 10년 이하) 및 벌금 (5~7천만원 → 부당이익의 1~3배 이하) 상향

< 주요 제도 시행시기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유한회사 외감법 적용은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